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9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김용만・임미애・임오경

강준현 • 이용우 • 이춘석

이인영 • 박용갑 • 이훈기

민병덕 • 신영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 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 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 과 같음) 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2025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 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 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③ ~ ⑩ (생 략)

				<u>202</u>
<u>4년</u>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u>31 §</u>	일까지]		
		- <u>100분의</u>	20	
③ ~	10	(현행과	같음)	